

의안번호	2212030
의 퇴 인	황정아 의원
회 답 일	2025. 8. 14.
추계번호	25F4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9년간 총 463억원(연평균 5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은 2026~2030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신고시점을 고려하면 2027~2035년까지 발생
 -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의 연구개발특구 입주 여부 및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2조의2제1항)	-23.2	-46.3	-69.5	-81.0	-92.6	-69.5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46.3	-23.2	-11.6	-463.0	-51.4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2제1항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등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 감면대상 추가: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 추가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2조의2제1항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
 -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은 2026~2030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적용되며 감면효과는 신고시점을 고려하면 2027~2035년까지 발생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은

2020~2024년(잠정) 연평균 92.6억원 수준

- 동 감면은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연평균 실적이 '1/4'를 곱하여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연 단위 발생액(100% 감면기준)을 계산하고, 향후 세수효과를 계산
 - 신규 입주기업의 연 단위 감면액(100% 감면) = 92.6억원 × 1/4 = 23.2억원

[표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배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입주	100%	100%	100%	50%	50%				
2027년 입주		100%	100%	100%	50%	50%			
2028년 입주			100%	100%	100%	50%	50%		
2029년 입주				100%	100%	100%	50%	50%	
2030년 입주					100%	100%	100%	50%	50%

주: □는 100% 감면, ▨는 50% 감면

-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를 포함시키는 안은, 관련 자료의 부재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여 세수효과에서 제외함
 - 이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의 연구개발특구 입주 여부 및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관련 정보가 부재함
 - 이를 고려할 때 동 세수효과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감면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실적 등에 따라 감면액 변동이 큼

[표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실적: 2020~2024년(잠정)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감면실적	106	52	116	114	75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향후 2020~2024년 실적의 연평균(92.6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동 감면이 입주 후 5년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평균 감면실적을 연간 감면액으로 환산하여 시점별 배분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92.6억원 × 1/4* = 23.2억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표 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발생액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입주	23.2	23.2	23.2	11.6	11.6				
2027년 입주		23.2	23.2	23.2	11.6	11.6			
2028년 입주			23.2	23.2	23.2	11.6	11.6		
2029년 입주				23.2	23.2	23.2	11.6	11.6	
2030년 입주					23.2	23.2	23.2	11.6	11.6
계	23.2	46.3	69.5	81.0	92.6	69.5	46.3	23.2	11.6

주: □ 는 100% 감면, ▨ 는 50% 감면

(3) 추계결과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9년간 총 463.0억원(연평균 5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2조의2제1항)	-23.2	-46.3	-69.5	-81.0	-92.6	-69.5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46.3	-23.2	-11.6	-463.0	-51.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